

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
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(☎ 044-201-4236)

▶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 기준을 변경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
- 긴 우산·손톱깎이·접착제·와인따개·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며,
 - * 염색약·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었으나, 2kg까지 반입 가능
- 기내 안전·보안 확보를 위하여 칼 종류 등 위험도가 높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.
 - *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, 버터칼, 안전면도기·면도날 등은 허용
- 또한, 도검류·공구류·생활도구류·총기류 등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고, 국민·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훈령·예규·고시 > 고시 >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

<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>

- ▶ 추진배경 :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은 규제를 완화하고,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제한 강화
- ▶ 주요내용 : 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(고시) (<http://www.molit.go.kr>)
 - ①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가능(긴 우산·손톱깎이·접착제·바늘 등)
 - ② 칼·무기 등 고위험물품은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금지(플라스틱칼·버터칼 등은 제외)
 - ③ 세부 품목별 구분, 국민·종사자가 알기 쉬운 용어 및 사진 등 추가
 - ④ ADS-B 지상시스템은 통달범위 내에서 항적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항공기 타겟 위치는 현시장비 화면에서 확인 되어야 함
- ▶ 시행일 : 2014.1.1.